

**[붙임1]**

##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

1. 서류심사

구 분	합계	성적 및 교육사항	자격증	자기소개서 (직무수행계획서)	우대 및 가점
기간제근로자	100	30	10	60	장애인 : 5점 취업지원대상 : 5-10점

2. 면접시험

구 분	합계	전문성/역량	인성/태도	우대 및 가점
기간제근로자	100	50	50	장애인 : 5점 취업지원대상 : 5-10점

※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)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,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

3.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표

구 분	일 반 자 격	배 점
기간제근로자	정보처리/워드프로세서/세무회계/전산세무/전산회계/기업회계/ 컴퓨터활용능력/교통/자동차검사/자동차정비	1급 : 2점 2급 : 1점 기사 : 3점 산업기사 : 1점
공통	한국사능력검정시험/한국어능력시험(KBS)	1급 : 2점 2급 : 1점

- \*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하며, 동일분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
- \* 자격등급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해당자격의 하위등급으로 판단(단,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단일등급은 1급으로 평가)
- \*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행된 자격만 인정

4. 직무수행계획서 채점기준 \*위촉연구원

평가기준	배 점	채 점 기 준				
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해당분야 응시적정성	30	30	24	18	12	6
해당업무 비전제시 능력	30	30	24	18	12	6

5. 자기소개서 채점기준 \*청년인턴/실무원

평가기준	배 점		채 점 기 준				
	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	성과도출	(10)	10	8	6	4	2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
어려움 극복과 성과 도출 경험	성과도출	(10)	10	8	6	4	2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
공단 지원 동기와 비전	성과도출	(10)	10	8	6	4	2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

6. 성적 및 교육사항 반영기준

구분	점수 부여 기준	비고
학교교육	직무 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	사외교육은 이수시간이 명시된 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하여 인정
사외교육	직무 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	

\*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 과정은 단위수 당 2점

[붙임2]

##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채용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, 관련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채용전형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*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]**

- 수집항목
  - 입사지원 관련 항목 : 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, 학력사항, 병역사항, 장애 및 보훈사항, 자격증 및 어학취득사항, 근무경력 등
- 개인정보 수집방법 : 입사지원서 및 임용포기서(필요시)
- 개인정보 수집목적 : 입사지원 정보 확보, 지원자 문의 응대, 지원자 식별, 전형결과 및 채용 변경사항 등
- 보존항목 : 입사지원서류 일체
- 보존근거 :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- 보존기간 : 5년 동안 보존,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

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, 동의합니다. 성명 : \_\_\_\_\_ (서명)

**[제 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]**

- 공단은 지원자가 제출한 정보의 검증에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- 제공 대상 :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경찰서
  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생년월일, 주소
  -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: 입력정보의 진위여부 파악
  -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즉시 파기

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, 동의합니다. 성명 : \_\_\_\_\_ (서명)

**[한국교통안전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 결격사유 동의]**

- ① 피성년후견인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⑦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⑩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⑪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⑫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
- 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- ⑭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상기 내용을 읽었으며, 동의합니다. 성명 : \_\_\_\_\_ (서명)



[붙임4]

■ 채용업무처리세칙 [별지 제1호서식](제7조 관련)

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

한국교통안전공단 「인사규정」 상 채용결격여부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아래의 질문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후 회신해주시기 바라며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취소 또는 해임요구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- 1. 피성년후견인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   
 ※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   
 ※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판단
- 3-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- 3-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- 3-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- 3-4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- 3-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   
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
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
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
- 3-6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**해당여부**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 ----- 해당  / 해당없음   
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
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 
 ※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(crimis.police.go.kr)에서 개인의 범죄, 수사경력을 본인열람하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
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- 5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- 6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- 7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**해당여부**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- 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하는지 ----- 해당  / 해당없음

※ 해당 기재사항은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자료로만 활용됩니다(이외 용도 활용 불가)

년 월 일

지원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(서명)

## [붙임5]

■ 채용업무처리세칙 [별지 제17호서식](제40조 관련)

#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업무처리세칙」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#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[붙임6]

## 임용포기서

○ 성 명 :

○ 주민번호 :

○ 주 소 :

○ 포기사유

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

(서명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